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05. 11. (화)	담당자	권주리 사무국장 [redacted] 상담원
서울시 영등포구 [redacted]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daum.net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는 묵살하고 범죄 수사조차 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고소·고발한다.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1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더 나아가 강간, 스토킹, 성매매 대금을 갚은 수법으로 가로챈 성착취 범죄자를 수사도 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장을 파기하는 등 명백히 불법행위를 자행한 수사기관을 규탄하며,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역 OO경찰서 경찰관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하였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제공, 사이버포래상담원 양성과 지속교육, 아동·청소년/인터넷/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 및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사이버포래상담사업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1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자를 경찰서에 출석시켜 수사하지도 않고 피해아동과 성매매 알선자의 합의를 종용,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장을 파기하는 등 사건을 종결시킨 수사기관을 규탄하며 서울지역 OO경찰서 경찰관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건경과, 고소·고발 취지, 고소·고발 내용, 향후 계획 등을 밝힙니

다. 널리 알려주시고 이번 고소·고발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끝까지 관심 갖고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건경과

1. 2020년 12월, 성매매 알선 범죄자 A는 고소인 피해아동(이하 피해아동)에게 온라인 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본인이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회유, 위협, 강요하는 수법으로 피해아동에게 제안을 수용하게 한 후,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또한 A는 피해아동에게 갖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나아가 성폭력, 스마트폰 추적 앱을 통한 피해아동을 감시하는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악랄한 성착취 범죄자이다.

3.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욕설을 하는 A가 너무나 무섭고, 억울함을 느낀 피해아동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 B와 함께 A를 신고하기 위해 OO경찰서를 찾아갔다.

4. 그러나 어렵게 방문한 피해아동에 대하여 OO경찰서에서는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또한 담당 경찰관은 A와 분리조치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성매매 알선 범죄자와의 합의를 종용함은 물론 A로 하여금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다른 피해자 B가 제출했던 고소장을 파기한 후 이들을 그냥 돌려보냈다.

5.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21년 2월경 다른 디지털 성착취 피해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센터를 찾아온 피해아동으로부터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관련 수사기관과 경찰관을 고소·고발하게 되었다.

○ 고소·고발 취지

고발기관인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활동과 성착취(성매매 등)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들을 모두 피해자로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 활동에 수 년간 힘써왔다. 그 결과, 2020년 4월 30일 ‘아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어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발/강제 구별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기관들은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여전히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을 고수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법적·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한 피해아동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잇따라 제보되고 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본 사건을 명백히 성매매에 알선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규정하여 수사기관과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수사기관에서 보호는커녕 범죄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피해아동 지원기관이 그 사실을 묵과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행위이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기관이 침묵한다면, 많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경찰의 대응이 당연한 수사관행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보아 강력한 문제제기 형태인 고소·고발을 하게 되었다.

또한 성매매 알선행위 등 범죄행위가 명백한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제발로 찾아왔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수사기관이 왜 존재하여야 하는가. 이는 충실히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수사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일 뿐이다. 전체 경찰관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여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한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선 경찰들의 적법한 수사처리와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인식 수준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은 지역사회 내 아동·여성에게 대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가 발생할 시 제대로 된 수사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법하지 못한 경찰의 수사방식을 공론화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과정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개정된 ‘아청법’이 제대로 작동하여 우리 사회가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O경찰서 수사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한다.

○ 고소·고발장 내용

■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자(성매매 알선자, 성매수자)를 수사하지 않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취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죄.

형법 제 122조에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소인은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소인은 피해아동의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를 충분히 인지했을 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를 받아 경찰서를 출석한 성매매 알선자를 입건하지 않았고, 관련 조사 및 서류,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일체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둘째, 피해아동·청소년과 성착취자(성매매 알선자) 간 합의를 종용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파기함으로써 고소인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

형법 제 123조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소인은 피해아동이 성매매 알선자를 고소하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진술을 막아서며 성매매 알선자와의 합의를 중용하고,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파기함으로써 피해아동이 행사할 수 있는 고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셋째, 피해아동 외에 다른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파기한 공용서류손상의 죄.

형법 제 141조 제 1항에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아동 외에 다른 피해자는 성매매 알선자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OO경찰서에 제출하였지만, 피고소인은 이를 파쇄기에 넣어 파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관련 조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고소인 피해아동과 고발인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피고소인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로 고소·고발한다.

고소인과 고발인의 대리인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서순성(단장), 김병희, 김수현, 김윤지, 김현아, 김희진, 박숙란, 배수진, 서미옥, 신수경, 이기연, 이시정, 이은솔, 전가영, 채우리, 최석봉, 한욱

□ 수사참여대리인

변호사 김수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수현

법률사무소 소도

담당변호사 김병희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배수진

법무법인(유) 세광

담당변호사 최석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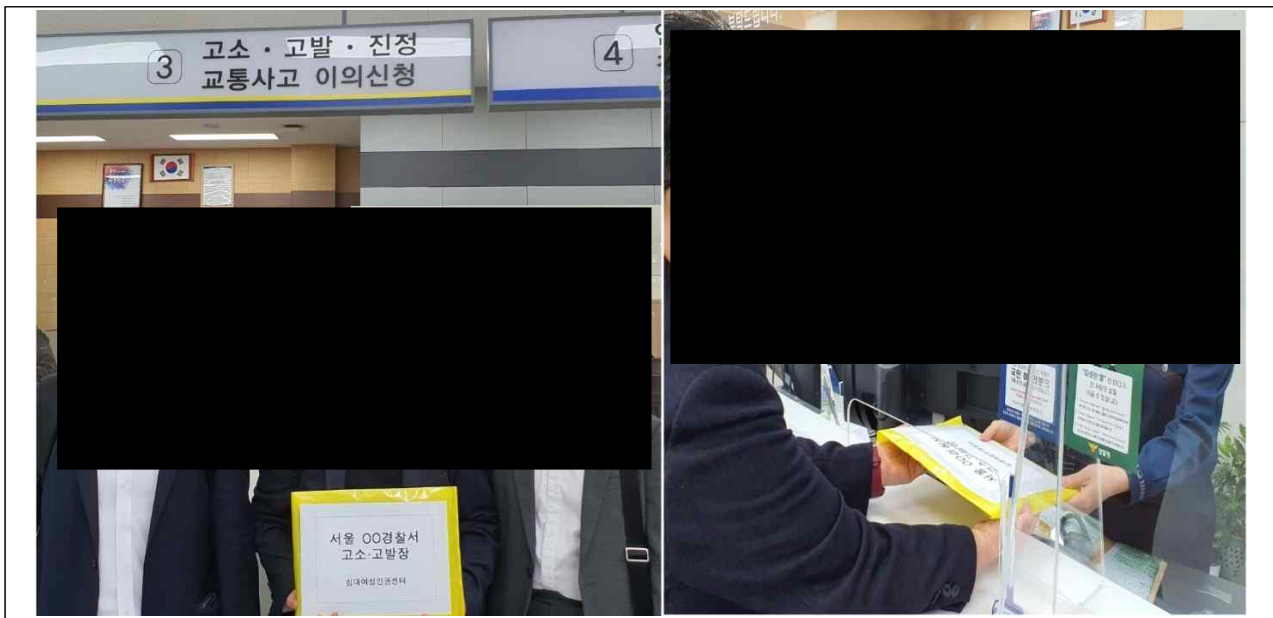
○ 향후계획

1. 피해아동 보호와 법률, 의료, 심리 등 통합지원 제공

2. 본 고소·고발에 대하여 향후 고소·고발인 조사 참여, 사건진행상황 모니터링, 보도자료 배포

3.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자(성매매 알선자, 성매수자) 범죄 수사기관과 수사관에 대한 온라인 제보 채널 개설

- 일정 기간동안 운영하여 수사기관과 수사관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내용을 확인하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불법행위가 명백한 각 사건 고발조치 예정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최석봉·김수현 변호사가 서울지방법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별첨)

고 소 · 고 발 장

고 소 인 이 은 서(가명)

고 발 인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자 조 진 경

전화 : 02-6348-1318

위 고소인과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서순성, 김병희, 김수현, 김윤지, 김현아, 김희진, 박숙란, 배수진,
서미옥, 신수경, 이기연, 이시정, 이은솔, 전가영, 채우리, 최석봉,
한욱

피고소인 성명불상자(OO경찰서 소속 경찰관)

고 소 · 고 발 취 지

고소인 및 고발인은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로 고소·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